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갑”이 운영하고 있는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0주식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양수·도 전에 제작, 판매한 상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 전원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 3 조 (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을”은 (별첨1) 과 같이 2003년 11월 30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사업양도를 위해 2003년 11월 30일에 폐업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

제 4 조 (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는 양수·도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장부 가액에 의한다.

제 5 조 (양수·양도대금의 지급) “을”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2003년 11월 30일의 결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또한, 대금지급방법은 “갑”과 “을”이 결정한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 (양수·양도의 효력) 본 계약은 2003년 11월 3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협조의무) “갑”은 “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0월 0일

갑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0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00주식회사  
대표이사 ○ ○ ○